

# 해 외 출 장 보 고 서

「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」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해외조사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.

2008. 10.

농촌발전연구센터

연구위원 박대식

# 목 차

1. 출장목적.....	1
2. 출장자 및 출장기간.....	1
3. 출장일정.....	1
4. 출장조사결과 요약.....	2
1) 주 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.....	2
2) EU 집행위원회 고용사회총국.....	3
3) EU 집행위원회 농업·농촌개발국.....	6
4) 유럽농민단체협의회(COPA) 및 유럽연합농협협의회(COGECA).....	8
5) 프랑스 농업인연맹.....	9
6)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.....	10
7) 프랑스 농업·식품·수산·농촌부.....	12
8) 프랑스 농가 및 농촌조사.....	14
5. 주요 수집 자료.....	18

## 1. 조사목적

- 유럽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현황을 파악하고,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사례를 조사하며,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집·조사하여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
## 2. 출장자 및 출장기간

- 출장자 : 농촌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박대식
- 출장기간 : 2008. 9. 23 ~ 10. 2 (8박10일)
- 출장지역 : 벨기에(브뤼셀), 프랑스(파리 및 Covcy Laville)

## 3. 출장일정

일시		방문기관	비고
9.23(화) 13:35~22:10		출국 (인천 ⇒ 암스테르담 ⇒ 브뤼셀)	시차: 8시간
9.24(수)	09:00~10:00	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	조재호 농무관 면담
	10:30~12:00 14:00~15:00	EU 집행위원회 고용사회총국 총괄과	Fernando Pereira (Deputy Head of Unit) 면담 및 관 련 자료 수집
	15:30~17:00	EU 집행위원회 농업·농촌개발국	C. Salavert 등 면담
9.25(목)	09:30~12:00	유럽농민단체협의회(COPA) 및 유럽연합농협협의회(COGECA)의 사회복지 및 여성위원회 담당부서	Agnes Luycx (Senior Policy Advisor) 면담 및 관련 자료 수집
	13:30~14:30	농업협동조합중앙회 EU지역사무소	김재철 소장 면담
	15:00~17:00	EU 집행위원회 고용사회총국 남녀평등과	F. Devonice 면담
9.26(금)	10:00~12:30	EU집행위원회 농업정보센터	자료 검색 및 수집
	15:00~17:00	유럽농민단체협의회(COPA) 및 유럽연합 농협협의회(COGECA)의 농촌개발 담당	Ingeborg Bromée (Policy Advisor) 등 면담

일시		방문기관	비고
9.27(토)~9.28(일)		이동 (브뤼셀 ⇒ 파리)	철도
		주요 서점 (정부간행물센터, 대학가 서점 등)	관련 자료 검색 및 구입
9.29(월)	10:00~12:30	프랑스 농업인연맹 (Conferation Paysanne)	N. Poupinet(유럽 담당) 면담 및 관련 자료 수집
	14:00~17:00	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 (FNSEA)	F. Caro(여성농업인 담당) 면담 및 관련 자료 수집
9.30(화)	09:30~12:00	프랑스 농업·식품·수산·농촌부 재정·사회·병참사업본부	F. Renaud(농업사회보장국) 등 면담
	13:00~15:00	이동(파리 ⇒ Covcy Laville)	
	15:00~18:30	농가 및 농촌마을 조사 (파리 북방 150km 위치)	여성농업인 (J. Vagniez) 및 가족 면담, 농장 및 마을 시찰
	18:30~21:00	이동(Covcy Laville ⇒ 파리)	
10.1(수) 16:25 ~ 10.2(목) 11:55		귀국 (파리 ⇒ 암스테르담 ⇒ 인천)	

#### 4. 출장조사결과 요약

##### 1) 주 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

- 조재호 농무관으로부터 EU 관련 기본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음.
  - EU 관련 기초 통계자료 수집
- EU 회원국은 최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합류해 총 27개국임.
- 유럽연합은 파리조약, 로마조약, 미스트리히트조약, 암스테르담조약, 니스조약 등을 통해서 정치적 기틀을 다짐.
  - 이러한 조약에 의거해 EU 회원국은 자국의 자치권 일부를 공동 정부에 위임하고 공동 정부는 각국 정부의 국익뿐만 아니라 회원국 전체의 공동이익을 대변함.

- 조약은 1차(primary) 법안으로 알려진 조항들로 구성됨. 1차 법안으로부터 2차 법안이 파생되는데, 2차 법안은 규정(regulations), 지침(directives), 권고안(recommendations) 등으로 구성됨.
  - 지침도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약함.
- 유럽연합 이사회(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)는 EU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임. EU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6개월 동안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음. 모든 회의에는 개별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된 장관이 참석함.
- 유럽 의회(the European Parliament)는 유럽연합 시민을 대표하며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입법부로 국민의 선출로 구성됨. 보통 선거에 의한 직선제로 구성되며 의원 선거는 5년마다 열림.
  -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에 대한 민주적인 통치력을 행사함.
  - EU의 정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함.
- 유럽집행위원회(the European Commission)의 직무는 EU의 전체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개별 회원국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음.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 의회에서 채택된 규정 및 지침이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함.

## 2) EU 집행위원회 고용사회총국

- 1957년 유럽공동체의 출발과 함께 로마조약(1975)에서 ‘동일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’ 원칙을 명시한 이래 유럽연합은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, 동등한 기회,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의 영역으로 남녀근로자의 동등권을 확대해 왔음.
- EU의 성평등정책은 고용정책, 정책결정에의 균형 잡힌 참여, 직업과 사적 생활의 조화, 사회적 보호로 나눌 수 있음.
  - 고용정책은 남녀간의 고용 격차 줄이기, 실업률에 있어서 남녀 격차 줄이기, 남녀간의 임금 격차 줄이기로 구성됨.
  - 정책결정에의 균형 잡힌 참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평등을 의미하며, EU는 공식적 권고, 성적 불평등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강조함.
  - 직업과 사적 생활의 조화: 여성고용을 진작시키면서 남성들이 가정생활에서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촉구함.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여성의 임금노동활동을 늘리는 것이라고 봄.
  - 사회적 보호는 세금 및 혜택에서 남녀간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

표로 하며, 사회보장제도를 성인지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함.

- EU의 성평등정책의 세 가지 접근법은 ‘동등대우 확보’(equal treatment), ‘적극적 시정 조치’(positive action), ‘성 주류화’(gender main-streaming)임.
  - 동등대우 확보 접근 방법은 ‘법 앞에서의 평등’을 강조하면서 정치, 경제, 사회적으로 남녀간 동등대우를 주된 목표로 함.
  - 적극적 시정조치는 법에서 보장하는 ‘기회의 평등’에서 더 나아가 ‘결과의 평등’을 추구함. 과거로부터의 차별적 구조가 갖는 관성적 효과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차별 철폐 전략임.
  - 성 주류화는 모든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 남녀 불평등 심화의 방지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우선 사항으로 고려할 것을 제도화하는 전략임.
  
-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EU 성평등정책이 주로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EU가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체로 출발했기 때문임.
  - 시간이 흐르면서 성평등정책의 범위는 사회보장, 모성보호 및 육아, 비정규직, 고용평등, 상품과 용역에 대한 접근성 관련 내용으로 확대되었음.
  
- 1986년에 만들어진 지침(Directive 613/86)에서 농업을 포함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에서의 남녀평등이 명시되었으며, 이것이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음.
  - 지침은 회원국가가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임.
  
- EU의 여성정책 프로그램
  - **행동프로그램**: EU집행위원회는 남녀의 차별을 제거하고 기회균등을 위해 행동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집행함.
    - 5차 행동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① 경제 분야에서의 남녀평등 추구, ② 정책 결정 분야의 평등 지원, ③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권리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, ④ 여성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지원, ⑤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키는 일을 지원 등임.
    - 6차 행동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가동될 예정임. 2007년은 ‘유럽 기회균등의 해’로 설정함.
  - **구조기금 프로그램**: 구조기금이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지역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유럽사회기금(ESF), 유럽지역발전기금(EFRE), 유럽농업시설보장기금(EAGFL), 어업기구보장기금(FIAG) 등이 있음.

- EU의 여성과 남성의 생활 실태
  -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고용 분야가 좀 더 한정되어 있음.
  - 경제 및 정치 분야의 의사결정의 핵심 지위에는 여성이 아주 소수임.
  - EU 25개 국가의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는 15% 정도임.
  -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7개월 먼저 은퇴함.
  
- 여성은 실업률, 장기 실업, 빈곤 등에서 남성보다 취약함.
  
-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 원칙
  - 고용에 대한 접근성(승진, 직업훈련 포함)에 있어서 남녀평등
  -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평등
  - 직업 관련 사회보장제도
  
- EU 성 평등 연구소(EU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)는 법상으로는 출범을 했으나 연구소장 등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서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.
  
- EU의 남녀격차 현황(2006년)
  - 취업률 격차(남성 취업률에서 여성 취업률을 뺀 것)
    - EU 27개국 평균: 14.4%
    - 벨기에 13.9%, 덴마크 7.8%, 독일 10.6%, 스페인 22.9%, 프랑스 10.8%, 이탈리아 24.2%, 헝가리 12.7%, 스웨덴 4.8%, 영국 11.5% 등
  - 실업률 격차(여성 실업률에서 남성 실업률을 뺀 것)
    - EU 27개국 평균 1.4%
    - 벨기에 1.9%, 덴마크 1.2%, 독일 -0.2%, 스페인 5.3%, 프랑스 1.5%, 이탈리아 3.4%, 헝가리 0.6%, 스웨덴 0.4%, 영국 -0.8% 등
  
- EU의 취업률 제고 목표: 2010년까지 70%
  
- 원래 EU 회원국들과 최근에 새로 가입한 EU 회원국 간에는 여러 가지 지표 상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.
  
- European Women's Lobby의 정책 우선 분야
  - 리더십 및 의사결정과정
  - 고용과 경제적 독립: 직업과 사생활의 조화, 임금격차 등
  - 빈곤, 사회보장, 사회적 배제
  - 이주 및 이민

- 건강: 재생산 및 성적 권리 등
- 폭력 등

○ 고용에 있어서 남녀격차를 줄이기 위한 EU의 주요 전략

- 여성의 취업률을 2010년까지 60%로 제고
- 취업 분야에 있어서 남녀 격리 현상 완화
- 남녀 임금 격차 해소
- 직장 일과 사적 생활의 조화
- 여성의 사회적 배제 예방
- 사회단체 및 민간경제부문과의 협조 강화

○ 남녀평등 관련법에서는 차별(discrimination)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고, 희롱(harassment)도 일반적인 희롱과 성희롱으로 구분함.

### 3) EU 집행위원회 농업·농촌개발국

○ EU의 신 농촌개발정책(2007~2013)의 특징

- 유럽농촌개발기금의 창설
- 정책목표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
- 농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상향식 접근방식의 강화: 회원국 및 지역 활동그룹의 역할 제고
- 사전·사후통제·평가보고 체계의 일원화
- 회원국과 집행위원의 명확한 책임 구분

○ 신 농촌개발정책의 공동목표

-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(제1영역)
- 국토관리 및 환경개선(제2영역)
- 삶의 질 향상 및 경제활동의 다각화(제3영역)
- LEADER식 접근방법

○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최소 예산지원비율을 정함: 제1영역 10%, 제2영역 25%, 제3영역 10%, LEADER 분야 5%(신규 가입국 2.5%)

○ EU 농촌개발 예산은 EU와 회원국의 공동부담 형태로 지원되는데 각 회원국

이 정한 사업에 EU 공동예산을 지원하는 최대 예산지원 비율은 제1영역 50%, 제2영역 55%, 제3영역 50%임.

- 낙후지역의 경우는 제1영역 75%, 제2영역 80%까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.

○ 농림업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

- 인적 자원: 직업훈련과 정보제공 활동, 영농후계자 지원, 조기은퇴 지원, 경영자문 서비스 등
- 물적 자원: 농가시설 현대화,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, 농가 및 식품 및 1차 생산물 가공업자간의 협력 지원, 농림업 관련 인프라 확충
- 농식품 품질: 품질제고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, 기준 충족 장려를 위한 농가 지원
- 신규 회원국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: 신규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환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 생계농가, 생산자 단체 설립 및 운영에 지원이 가능함.

○ 국토관리 및 환경개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

- 지속가능한 농지의 활용: 농업-환경 연계 프로그램, 조건불리지역 지원, 동물복지 지원 등
- 지속가능한 산지의 활용

○ 삶의 질 향상 및 경제활동의 다양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

- 농촌경제 다각화
-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
- 훈련, 기술 획득 및 전파

○ LEADER식 접근

- 2007년부터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농촌개발예산의 5%를 LEADER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.
-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: ① 지역 활동그룹이 마련한 지역발전전략의 이행, ② 국가간, 지역간 협력사업, ③ 지역활동그룹 운영비, 지역발전전략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능력개발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

○ LEADER식 접근의 특징

- 지역에 기반을 두는 발전전략
- 상향식(Bottom-up) 접근
- 민관 협력체계: 지역 활동그룹(Local Action Groups)

- 혁신(Innovation) 촉진
- 통합적·다부문적 접근
- 네트워킹(Networking)
- 협력(Cooperation)

○ 지역 수준에서의 LEADER식 접근의 실천 원칙

- 역량 구축(Capacity Building)
- 지역 활동가의 조직화
- 지역사회 조사 분석
- 기존의 활동 및 프로그램 점검
- 파트너십의 구축
- 지역발전전략 마련

○ Co-ownership 관련 각국의 정의

- 벨기에: 배우자가 co-ownership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함. 소유권과 생산권을 분리함.
- 스페인: 농장과 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50% 이상이어야 하며, 젊은 농업인부부에만 적용됨. 소유권의 1/3 이상의 이전을 전제로 함.
- 프랑스: 공동농업경영체(GAEC)와 같은 농업회사를 통해서 배우자가 co-ownership 지위를 갖게 됨.
- 이탈리아: 농업회사에 참여하는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. 배우자와 가족들의 참여를 고려하기 위해서 집합적 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함.
- 독일: co-ownership제도가 없고, 농업인의 지위는 개별 농업인이거나 회사 형태임.

4) 유럽농민단체협의회(COPA) 및 유럽연합농협협의회(COGECA)

- 유럽농민단체협의회(COPA)는 1959년, 유럽연합농협협의회(COGECA)는 1960년에 창설됨.
- 유럽농민단체협의회(COPA)의 사무국은 195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, 유럽연합농협협의회(COGECA)의 사무국과 1962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.
  - 사무국은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별도의 회장단과 회원단체로 구성됨.

- 유럽농민단체협의회(COPA)의 설립목적
  - EU 공동농업정책의 입안,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영향력을 행사함.
  - 농업인의 이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
  - 다른 부문의 이익단체 및 사회조직들과의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개발함.
  
- 유럽연합농협협의회(COGECA)는 유럽연합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임. 공동농업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, COPA와의 연대, 유럽연합 내의 농업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통해 농정활동을 수행함.
  - 정회원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전국단위 농업중앙회 혹은 연합회로 회원단체 회장단회의에서 만장일치에 의해 가입이 됨.
  
- COPA와 COGECA는 모두 의장단, 회원기관 회장단회의, 작업반을 두고 있으나, COPA는 총회, 일반전문가그룹, 공인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COGECA는 일반경제위원회와 전문가회의를 운영하고 있음.
  
-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단체에의 참여가 가족농업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도 허용됨.
  
- 농업협동조합의 경우는 벨기에는 조합원 자격을 경영주만으로 제한함. 프랑스는 1농장 당 1표를 허용하고 부부 모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함.
  
-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의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 관련 지침(Directive 86/613/EEC)에 대한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
  - 모성(maternity) 보호의 개선
  - Assisting Spouses의 노동 인정: 동거 및 동성 부부에게도 권리 인정
  - 가족요양을 위한 휴가, 부성(paternal)휴가 등

##### 5) 프랑스 농업인연맹(Confederation Paysanne)

- 면담을 한 Nicol Poupinet씨는 프랑스 농업인연맹의 유럽담당으로 이전에 농업인연맹 전국사무총장을 지냈다고 함.
  
- 현재 Nicole Poupinet씨는 젓소 50마리(우유 쿼터 38만 리터), 식용 토끼(3주당 800마리 출하) 등을 사육하고 있다고 함.
  - 2가족(4명)이 함께 농업회사를 설립하였음.

- 공동농업경영체(GAEC) 형태로 남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1인당 25%의 권리를 소유함.
- 프랑스 농업인연맹은 1987년 창립되었으며, 회원은 약 15,000명 정도이고 여성 비율은 1/3 정도임.
  - 전국적으로 91개 회원 조직이 있음.
  -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위원회가 40명으로 조직되어 있음.
  - 프랑스 농업인단체 중에서 2번째로 큰 조직임.
- 프랑스 농업인연맹은 농업회의소 선거 시 약 23% 정도 선출직을 배출하고 있다고 함.
  - 대략 110,000표를 획득함.
- 공동경영주 관련 역점사업
  - 모든 활동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함.
  - 농업등기부제도를 마련하여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지위를 손쉽게 기입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임.
- 프랑스 농업인연맹의 입장
  - 중·소농의 이익을 대변함.
  - 중·소농이 고용효과, 환경보존 등의 측면에서 프랑스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더 유익하다고 봄.
  - 규모화 중심의 대농정책은 대다수 농업인을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킬 것으로 판단함.
  - 기존의 농업보조정책이 지나치게 대농들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봄.
  - 앞으로 중·소농들도 정부의 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.

## 6)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

- 여성농업인을 담당하는 Mrs. Florence Caro가 많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음.
-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(FNSEA)은 1946에 창설되었으며 프랑스 농업인의 70%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함.

- 20,000개의 지역조직, 22개의 지역연합회, 36개의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구성됨
-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는 소작농업인, 여성농업인, 농지소유자, 은퇴농업인으로 구분됨.
- 하부조직으로 여성농업인위원회(La Commission Nationale des Agricultrices: CNA)가 조직되어 있음.
- 여성농업인위원회(CNA)의 주요 목적: ① 전문직업인으로서 남녀평등,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추구, ② 농업의 사회·경제적 인식 개선, ③ 농업 및 농촌발전 참여, ④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등임.
-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(FNSEA)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50년 역사
  - 1929년: 카톨릭농민회 결성
  - 1933년: 여성협회 창설
  - 1956년: 청년농업인단체(내부 여성농업인) 창립
  - 1957년: 여성농업위원회 창립
  - 1962년: 여성 전문 직업교육 실시
  - 1976년: 여성이 최초로 도회장이 됨.
  - 1977년: 농업인에게 연간 200시간 교육 보장(정부에서 지원)
  - 1981년: 여성이 최초로 장관이 됨.
  - 1982년: 여성이 경영주가 될 수 있게 됨.
  - 1985년: '가장'이란 개념이 없어짐.
  - 1989년: 여성에게도 신디케이트 투표권 부여, 전문직업인임을 강조하여 '여성 농업위원회'를 '여성농업인위원회'로 개칭함.
  - 1991년: 성희롱이 범죄로 규정됨.
  - 1991년: 남녀선거 참정권이 동등해짐.
  - 2005년: 남편 동의 없이도 농업경영이 가능해 짐. 동거자도 모두 권리를 인정 하도록 함.
- 농업고용(비임금) 현황(2006년): 611,209명
  - 경영주: 534,891명
  - 공동경영주: 67,642명
  - 가족종사자: 8,676명
- 여성농업인의 경우(2006년) 경영주 129,822명, 공동경영주 61,521명, 임금 근로자 99,210명.

- 2001년부터 신규 영농 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 의무사항이었음.
- 농업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.
- 여성경영주의 노동참여(2006년)
  - 공동농업경영체(GAEC): 22,884명
  - 유한책임농업경영체(EARL): 27,029명
  - 여성농업인 자신 명의: 64,503명
  - 기타: 15,406명
-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는 분야
  - 낙농·육우, 식량, 복합영농 등
- 농업인 인정 방안
  - 면적 기준: 자족 가능한 정도인 SMI의 1/2 이상
  - 면적과 관련하여 실제 또는 이론적 기준이 없을 때 노동시간 기준(연간 1,200시간 이상)을 적용함.
-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, 농업경영주, 공동경영주, 가족종사원으로 구분됨.
  - 농업임금근로자: 임금, 노동계약,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
  - 농업경영주는 완전 사회보장, 공동경영주는 부분적으로 사회보장이 이루어짐, 가족종사자는 최소 사회보장이 최고 5년까지 지원됨.
- 출산휴가는 일반 여성과 여성농업인 모두 16주를 사용할 수 있음.

## 7) 프랑스 농업 · 식품 · 수산 · 농촌부

- 재정·사회·병참사업본부의 농업사회보장국의 관련 전문가 3명을 면담함.
- 농업사회보장국의 전문가들과 함께



- 농업사회보장기구(MSA)를 농업 · 식품 · 수산 · 농촌부에서 통제 · 관리하고 있음.
- 농업사회보장기구(MSA)는 지난 80년 동안 농업 및 농촌의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.
- 농업사회보장기구(MSA)는 2,000명 이상의 행정요원, 27,000명의 선출직 지역대표, 18,000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  - 사회복지사 2,000명, 의사 500명, 위험예방 조연자 255명
- 프랑스 농업회사법인에서의 여성농업인 지위규정
  - 공동농업경영체(GAEC): ① 공동노동을 위한 조합적 성격이 강한 법인으로 10인 이하 구성원으로 조직, ② 구성원 전원이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각자가 독자적인 경영주 자격보유, ③ 부부와 제3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여성은 독자적 경영주 신분 보유
  - 유한책임농업경영체(EARL): ① 출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구성원은 동산, 부동산, 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출자해야 함, ② 구성원 모두 경영에

참여할 필요는 없고, 1인 출자로도 가능하며 부부만으로 설립이 가능, ③ 부부가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부인이 출자를 해야 하므로 부인의 재산이나 재산에서의 지분이 법인결성에 앞서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.

○ 농업인 인정 기준

- 면적 기준: SMI(최소자족 가능 면적으로 도별로 정하며 품목에 따라 다름)
- 노동시간 기준은 1,200시간 이상: 신고제이지만 MSA에서 신고서양식, 누적 기록 관리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함.

○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해양부문에서 먼저 발달하였음.

○ 공동경영주는 경영주보다 보험료가 적은 대신에 혜택도 적음.

○ 여성농업인 관련 핵심정책

- 남녀평등
- 사회보장제도의 개선

○ 농업 관련 보험료는 3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.

- 한 번 선택을 하면 5년 동안 같은 방법을 유지해야 함.

○ 1999년에 프랑스 농업기본법에 공동경영주 관련 지위 규정조항이 마련되었으며, 2009년부터는 4가지 지위(농업임금근로자, 농업경영주, 공동경영주, 가족종사원) 중에서 반드시 1개를 선택해야 함.

○ 농업 은퇴자의 70%는 연간 7,000유로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음.

○ 여성농업인들은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과 일반 여성의 동등권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음.

## 8) 프랑스 농가 및 농촌조사

○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(FNSEA)의 소개로 J. Vagniez씨(57세)의 농장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주변 농촌마을도 둘러봄.

- 파리 북방 150km Picardie주(주도 Amiens)에 위치함.
- 농장명: Ferme Rozieres

- Vagniez씨는 1978년 결혼과 동시에 농업에 종사함. 결혼 전에는 연구소에서 약학 관련 기술자로 근무함. 그동안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함.

○ 농장의 주택 및 창고 전경



○ Vagniez씨 및 아들과 함께



- 남편은 2004년에 은퇴하였으며 2007년에 아들과 함께 농업회사를 설립했는데 지분은 아들이 60%, Vagniez씨가 40%이고, 이익분배도 이에 따라 하고 있음.
  -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독립적인 공평한 혜택을 보고 있음.
  - 남편의 연금은 월 1,100유로 정도임

- 농장의 총 규모는 215 ha임(주변 농장의 평균 규모는 120ha 정도).
  - 주요 작목으로는 사탕무우 45ha, 밀 90~100ha, 옥수수 25ha, 유채 15~20ha, 린네(섬유작물) 15~18ha, 초지 10ha, 칠면조 14,000수 등임.

- 사탕무우를 수확하여 야적하고 있는 모습



- 딸은 결혼하여 출가했고, 아들은 27세이며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며 아직 미혼임.
  - 아들의 여자친구가 농장에서 잠시 함께 산 적이 있으나 농장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헤어져 도시로 돌아갔다고 함.
- 아들뿐만 아니라 주변 농장의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, 루마니아, 우즈베키스탄 등의 나라에서 신부감을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 아들의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 신부감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.
-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나 신부감을 프랑스 내에서 구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아들을 대도시에 보내줌. 이때는 남편이 농장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가끔 농가 헬퍼도 이용하기도 함.
- 농장의 농지는 대부분 남편 소유이나 20ha는 아들 소유이고, 20ha는 남편과

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음.

- 대부분의 농지는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임.
- 아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에서는 가족을 제외한 상시 유급 직원은 1인이고, 계절 농업노동자(4명)를 15일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, 주변 농장들과 품앗이를 하여 서로 돕고 있음.
- 농장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칠면조가 무겁고 사나워서 다소 무섭다는 것임.
- 아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의 1년간 매출은 칠면조가 60만 유로, 채소 등이 25만 유로 정도임. 그러나 경영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 수입은 3~5만 유로 정도밖에 안된다고 함. 아들은 농지 및 농기계 구입 등으로 인해서 아직 부채가 많다고 함.
  -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료로 연간 44,000유로를 지불하고 있음(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차하고 있다고 함).
- Vagniez씨는 결혼 이후 농업교육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았음. 회계, 축산 관련 교육을 많이 받았으나 농기계 관련 교육은 별로 받지 않았음.
- Vagniez씨의 은퇴 예정 시기는 앞으로 3년 후 정도로 보고 있음.
  - 최대 연금 수혜를 위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41년을 채워야 함.
  - 2 자녀, 연구소 근무 경력 등으로 인해서 연금 가입기간 산정에서 7년 정도 혜택을 보았다고 함.
- 농장 주변에는 12세기에 만들어진 고성벽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을 받아서 상당히 허물어진 상태임.
- 농장의 주택, 창고, 축사 등은 마을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함. 농장 인근에는 고등학교(농업기술학교)가 있는데 학생 수는 200명 정도라고 함.
- 인근 마을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고 주변 도시로 출퇴근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함. 각 가정에서 정원과 화분을 잘 관리하고 있었음.

○ 마을 전경



5. 주요 수집 자료

Droit rural, 2007, 『Droit rural』 , ellipses.

European Commission, 2002, 『Agriculture: The Spotlight on Women』 .

European Commission, 2005, 『‘Making Work Pay’ Debates from a Gender Perspective』 .

European Commission, 2005, 『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』 .

European Commission, 2006, 『Rural Development Success Stories』 .

European Commission, 2006, 『The Gender Pay Gap: Origins and Policy Responses』 .

European Commission, 2008, 『Manual for Gender Mainstreaming』 .

European Commission, 2008, 『European Community Acts: Equality for Women and Men Non-discrimination』 .

European Commission, 2008, 『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』 .

European Commission, 2008, 『Gender Inequality in the Risks of Poverty』 .

- and Social Exclusion for Disadvantaged Groups in Thirty European Countries』 .
- European Commission, 2008, 『Report i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』 .
- European Commission, 2008, 『A Selection of Leader+ Best Practices』 .
- European Commission, Directorate-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, 2006, 『Employment in Rural Areas: Closing the Jobs Gap』 .
- European Commission, Directorate-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, 2008, 『Rural Development in the EU』 .
- European Parliament, Committee on Women's Rights and Gender Equality, 2007, 『Report on the Situation of Women in Rural Areas of the EU』 .
- European Women's Lobby, 2007, 『Women Shaping the Future of Europe』 .
- FNSEA, 2006, 『50 ans d'histoire』 .
- FNSEA, 2006, 『La Commission Nationale des Agricultrices』 .
- FNSEA, 2008, 『Commission Nationale des Agricultrices』 .
- Grandguillot Dominique, 2008, 『nouveau Droit du Travail et de la Sécurité sociale』 , Gualino.
- La documentation Française, 2008, 『La protection sociale en France』 .
- MSA, 2006, 『de Législation Sociale Agricole』 .
- MSA, 2008, 『Chiffres utiles MSA』 .
- MSA, 2008, 『History of the French Agricultural Social Security』 .